

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
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
(민원감사담당관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65호
- 나. 제출자 : 도병두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10.

2. 제안이유

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침해 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공익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(안 제4조)
- 라.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(안 제6조 및 제7조)
- 마.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(안 제9조)
- 바. 협의체 구성·운영 및 민간협력(안 제10조 및 제14조)

4. 관계법령
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3조

5. 검토의견

① 주요 제정 내용

-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
-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.
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
- 안 제4조에서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.
-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대해 규정함.
- 안 제8조에서는 공익신고 기록 및 관리에 대해,
- 안 제9조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대해 규정함.
- 안 제10조에서는 공익신고 활성화와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규정함.
-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및 포상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.
- 안 제14조에서는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.

2] 종합의견

- 본 제정안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3조에 따라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16조 시행규칙까지 16개의 조문과 4개의 별지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공익신고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, 안전, 환경, 소비자 이익 분야에서 부패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함.
- 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진 행정환경으로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적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, 공익신고는 양심에 따라 사회문제에 대해 고발하는 용기있는 행동으로, 이를 권장하고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정의 실현과 건강한 시민사회 구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.

붙임 : 관계 법령 1부. 끝.

공익신고자 보호법

[시행 2022. 7. 5.] [법률 제18682호, 2022. 1. 4., 타법개정]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5. 7. 24., 2017. 10. 31.>

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7. 24.>